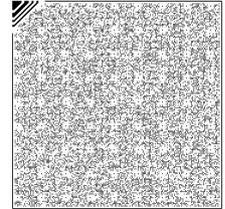
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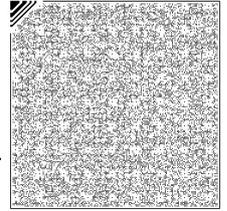
1. 보험급여과-376(2020.1.26.), 462(2020.1.29.), 485(2020.1.30), 597(2020.2.26.), 922(2020.2.24.), 1066(2020.3.3.), 1642(2020.4.13.), 1263(2022.3.13.), 4211(2023.8.30.) 및 중앙방역대책본부-9883(2023.8.23.) 관련입니다.
2.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주요 변경사항 >

구분	기존	변경
급여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대응지침」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-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-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 RAT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대응지침」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-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- (삭제)
산정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입원료 - 가10 「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(일반 원칙)」 및 「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」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(일반, 음압)를 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 격리실 입원료 - 가10 「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(일반 원칙)」에 따라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○ 음압 격리실 입원료 - 에어로졸 발생 처치·시설 또는 그 외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음압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
적용 기간	○ '23. 6. 1. 진료분부터 적용	○ '23. 8. 31. 진료분부터 적용

※ 급여대상(코로나19 확진환자) 변경사항은 통합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

붙임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

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광역대책본부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장, 부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대전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, 경기도지사, 강원특별자치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

주무관 박혜진 보건사무관 배운영 보험급여과장 정성훈 전결 2023. 8. 30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4241 (2023. 8. 30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http://www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2743 팩스번호 044-202-3937 / ellenpark127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